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방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선금 지급 이후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 과도한 선금 지급에 따른
부작용 등을 고려하여, 현행 선금 지급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선금 지급 한도 조정(안 제44조제1항제13호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공사·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선금급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
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 · 폐지 등, 없음

법률 제 호

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제13호 중 “70(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)”을 “70”으로 하고, “(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)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선금급)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 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4조(선금급) ① ----- ----- -----.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공사·제조 또는 용역 계약 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 분의 <u>70(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 0분의 100)</u> 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	13. ----- ----- -- <u>70(<삭제>)</u> 을 초과하지 않 는 금액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	
연 락 처	(044) 205 - 3776